

■ 최신 법령 ■

[상사] 개정상법상 새로운 기업형태(합자조합)

정철 변호사 | 이경호 변호사

1. 개정 배경

개정전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던 공동기업은 회사의 형태로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고, 조합의 형태로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유한책임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기업이나 지식기반 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출자자 개인에 집중되어 있고, 인적자산의 수용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물적회사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상법은 사원의 유한책임과 자본조달의 용이성이라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가지면서 설립·규모·운영에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합자조합의 성립,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및 이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합자조합의 성립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86조의2). 무한책임조합원의 출자 목적에는 제한이 없

으므로 노무를 출자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조합원은 금전이나 재산의 출자만 가능하고, 노무나 신용은 출자할 수 없습니다(법 제86조의8 제3항, 제272조).

3. 합자조합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가. 내부관계

조합의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행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은 단순한 수동적 투자자로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계약에서 다르게 정하면 유한책임조합원도 예외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법 제86조의4 제1항 제1호, 제86조의8 제3항).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의7).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비해, 합자조합에서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에 관해서는 조합계약에 의한 내적자치가 허용되어 출자가액에 비례하지 않는 손익분배가 가능합니다.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손익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86조의8 제4항, 민법 제711조 제1항, 제2항).

나. 외부관계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법 제86조의5). 유한책임조합원은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이나 합자조합을 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상법 제86조의8 제3항, 제278조).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무한책임사원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및 계약상의 책임이 모두 포함됩니다(법 제86조의8 제2항, 제212조). 유한책임사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법 제86조의6).

4. 합자조합의 이용가능성

합자조합의 이용가능성을 사원의 유한책임, 조세상 이점, 내적자치(정관자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합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발생하므로, 구성원 모두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에 비해 책임제한 측면에서의 매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조합원에게 직접 손익을 귀속시켜 조합원에게만 과세하는 합자조합의 상대적 장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경우에도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관(이사, 감사 등)의 설치 없이 조합계약만으로 성립이 용이하다는 점, 회사도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하지 않는 손익분배가 가능하고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가 가능하다는 점 등 주로 내적자치 측면에서는 합자조합의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상법」 타법개정(법률 제10366호, 2012. 6. 11. 시행)